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45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치하는엄마들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층 돈옴터 (대방동, 서울여성플
라자)
공동대표자 남궁수진, 최서연, 권영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피 고 경기도교육감
소송수행자 성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춘희, 최명준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평등 육아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노력 및 교육·홍보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2022. 12. 29. 피고에게 2018년부터 2021년 까지의 관내 학교에서 생긴 교사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나. 피고는 2023. 1. 10. 공개청구정보 중 사건이 발생한 학교명은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공개청구정보(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직위해제, 감사 실시, 장학과건, 퇴직, 경찰 고발, 피해 학생 지원 등) 중 일부 부존재한다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3. 9. 사건 발생 학교명(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같은 해 7. 5. 청구취지를 변경해 공개거부처분 취소의 대상 정보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을 추가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학교명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3. 4. 20. 학교명을

포함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관내 학교에서의 교사 성폭력, 성희롱 사건 처리 현황을 원고에게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는 학교명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3. 3. 27.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피고가 학교명을 공개한 것이고, 피고는 여전히 학교명 공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공개거부를 반복할 것이 분명하므로 취소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송절차 외에서 동일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라도 일단 피고가 그 정보를 공개한 이상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원고에게 새로 생길 이익은 없고, 피고는 유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의 조처 등 여러 사정을 참조해 종전에 거부했던 학교명의 공개청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도 거부처분을 반복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추가한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학교명에 대한 공개거부의 취소만을 구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원고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추가한 2023. 7. 5.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임은 기간계산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넘겨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정보를 공개했고 원고는 그 후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등 소송계속 중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김은구	<u>김은구</u> 
	판사	김은솔	<u>김은솔</u> 
	판사	정종인	<u>정종인</u> 

열람용

(별지)

공개청구정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교사의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아래 정보

1. 학교명
2. 최초사건인지 항목 (일자, 기관, 경로, 익명/실명 신고여부)
3. 관할 교육청 보고 항목 (보고일자, 보고기관)
4. 직위해제일 (직위해제 여부만 밝혀도 무방함)
5. 피해자-가해자분리 항목
6. 교육청 조사 항목 (조사여부, 조사기관, 조사기간)
7. 교내전수조사 항목 (실시여부, 실시기관, 실시기간)
8. 감사실시여부
9. 교육청 징계 의결 요구 내역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종류가 있다면 이를 그대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중징계’, ‘경징계’ 정도로 임의 가공하여 표시할 수 없음)
10. 실제 징계 내역 (징계내용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중징계’, ‘경징계’ 정도로 임의 가공하여 표시할 수 없음)
11. 수사기관 등에 신고, 고발, 수사의뢰 항목
12. 수사/재판 진행 상황
13. 피해자 지원 항목 (지원여부,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내용)

끝.